

▶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

아세프로마진 (Acepromazine)
아티파메졸 (Atipamezole)
아자페론 (Azaperone)
데토미딘 (Detomidine)
엠부트라마이드 (Embutramide)
하이드록시브로마이드 글루타메이트 마그네슘 솔트
(Hydroxybromide glutamate magnesium salts)
이소유제놀 (Isoeugenol)
메데토미딘 (Medetomidine)
메토미데이트 (Metomidate)
펜타메틸렌테트라졸 (Pentamethylenetetrazol)
페노티아진 (Phenothiazine)
석사메토늄 (Suxamethonium)
틸레타민+졸라제팜 (Tiletamine+Zolazepam)
트리카인 (Tricaines)
자일라진 (Xylazine)
요힘빈 (Yohimbine)
요힘빈+날록손 (Yohimbine+Naloxone)

▶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

액티아+알레트리스 (Actea+Aletris)
알트레노게스트 (Altrenogest)
안드로스톤 (Androstone)
보바인 소마토트로핀 (Bovine somatotropin·소 소마토트로핀)
부세렐린 (Buserelin)
카벤토신 (Carbetocin)
코리아닉고나도트로핀 (Chorionicgonadotropin·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클로프로스테놀 (Cloprostenol)
디노프로스트 (Dinoprost)
에스트라디올 (Estradiol)
에스트로젠+코리아닉고나도트로핀
(Estrogen+Chorionicgonadotropin·에스트로젠+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에티프로스톤 (Etiproston)
퍼티렐린 (Fertirelin)
폴리클 스티물레이팅 호르몬
(Follicle stimulating hormone·난포자극호르몬)
고나도레린 (Gonadorelin)
고나도트로핀 (Gonadotropin·에스트로젠+성선자극호르몬)

고나도트로핀 이과인 시럼
(Gonadotropin equine serum·말혈청성성선자극호르몬)

레시렐린 (Lecirelin)
루프로스티올 (Luprostio)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Medroxyprogesterone)
멜렌게스트롤 (Melengestrol)
오세테론 아세테이트 (Osaterone acetate)
옥시토신 (Oxytocin)
포사인 소마토트로핀 (Porcine somatotropin·돼지 소마토트로핀)
프로게스테론 (Progesterone)
프로스타글란딘 (Prostaglandin)
프로스타글란딘 에프2알파 (ProstaglandinF2 α)
세로토닌+에르고메트린 (Serotonin+Ergometrine)
시럼 고나도트로핀+코리아닉고나도트로핀
(Serum gonadotropin+Chorionic gonadotropin·혈청성성선자극호르몬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티아프로스트 (Tiaprost)
베트라부틴 (Vetrabutin)

▶ 생물학적 제제

개 [Dog]
단일 광견병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렙토스피라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
+렙토스피라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
+렙토스피라+코로나바이 러스
단일 렙토스피라
돼지 [Pig]
단일 일본뇌염
야생동물 [Wild animals]
단일 광견병
닭 [Chicken]
단일 뉴캐슬병
복합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
소 [Cow]
단일 브루셀라
단일 탄저
복합 탄저+기종저

▶ 항생·항균제 유효성분

세포베신 (Cefovecin)
세프퀴놈 (Cefquinome)
세프티오퍼 (Ceftiofur)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Chlortetracycline)
다노플록사신 (Danofloxacin)
독시사이클린 (Doxycycline)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키타사마이신 (Kitasamycin)
마보플록사신 (Marbofloxacin)
미노사이클린 (Minocycline)
올렌도마이신 (Oleandomycin)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록시트로마이신 (Roxithromycin)
세데카마이신 (Sedecamycin)
스피라마이신 (Spiramycin)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틸미코신 (Tilmicosin)
툴라트로마이신 (Tulathromycin)
타일로신 (Tylosin)

▶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

아트로핀 (Atropine)
클로르페릴라민 (Chlorpheniramine)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플루메타손 (Flumethasone)
플루닉신 (Flunixin)
프로세미드 (Furosemide)
헤파린 (Heparin)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Hydrochlorothiazide)
이소수프린 (Isoxsuprine)
멜록시캄 (Meloxicam)
페닐부타존 (Phenylbutazone)
피모벤단 (Pimobendan)
프레드니솔론 (Prednisolone)
라미프릴 (Ramipril)
테모카프릴 (Temocapril)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2013 0802 부터

실시합니다.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동물용
항균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동물용 의약품 + 처방제 이야기

도입목적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
- 안전한 축산물 유통
- 국민건강 확보
- 축산업생산성 향상



수의사 처방제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97개 성분 지정

수의사 처방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2013.5.3)한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동물용 마취제
17성분

동물용 호르몬제
32성분

동물용 항생·항균제
20성분

둘째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백신)
13성분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15성분

셋째 원활한 수의사 처방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액의 15%정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 관련 Q&A

Q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 처방대상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에 한 합니다

Q 축산농장의 사육단위가 큰경우 개체마다 일일이 처방을 받아야합니까?

직접진료후 진료 받은 개체에 한하여 발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축사단위로 처방 가능합니다.

Q 한꺼번에 여러 건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두고 필요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수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대상약품의 종류와 양을 정할 수 있으나, 여러건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수의사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동물용 의약품은 판매업소에서만 구입하여야합니까?

직접 진료 한 수의사는 처방대상약품을 조제·판매·투약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가 요청한 경우에 처방전만 발행하여 판매업소에서 처방대상약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수의사면 누구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처방전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개설된 동물 병원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 또는 축산농가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성분명 처방이 무엇입니까?

축산농가의 약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약품명이 아닌 약효를 내는 유효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품명을 함께 권장하도록 하여 축산농가가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양축농가의 생산비 증가등 경제적 부담은?

처방에 따라 사용 시 일부 진료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치료효율 향상 및 투약비용 감소 등으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야간이나 휴일에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안내 콜센터 (1877-7002)와 홈페이지 (www.evet.or.kr)를 통하여 안내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 방역총괄과 tel : 044-201-2352
● 방역관리과 tel : 044-201-2372